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검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시달

(관세청 외환조사과-1960, 2009.10.14.)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 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
3.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4.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
5.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35조(검사)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 ②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나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라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다.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로 한정한다)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213호(2009. 2. 9)

관세청 훈령 제1256호(2009. 8.20)

관세청 훈령 제1306호(2010. 1.15)

관세청 훈령 제1509호(2013. 1.1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대상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에 의한 관세청장의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한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2.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중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의한 관세청장의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한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3. “처분 담당부서”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징수 담당부서”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행한다. 다만,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②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행정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세관장은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행한다.

- 제5조(사무분장)** ①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및 과태료의 부과고지, 법원에의 통보업무는 처분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② 과태료의 징수와 채납처분 업무는 징수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6조(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의견진술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감경)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③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④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제6조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 및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이의제기서(양식)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로 한다.

⑤ 처분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 한다.

제10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미납시 조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에 의한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별도지침)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세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13호(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56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306호(2010. 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508호(2013. 1.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관계조항(법)	위반내용(법)	행정처분
제19조제1항 제1호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제19조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기준표

처벌조항(법)	위반내용(법)	부과금액
제32조제1항 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위반금액의 100분의 1 단, 거짓으로 증빙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제32조제1항 제3호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 국은행 등 신고사항 위반시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 시 : 위반금액의 100분의 1 ○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자 본거래 위반시 : 100만원
제32조제1항 제4호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제32조제1항 제5호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 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제32조제1항 제6호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 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제32조제2항 제1호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제32조제2항 제3호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 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00만원
제32조제2항 제4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 50만원 제19조제1항제2호 : 위반법조 별로 제32조제1항 각호의 부 과금액 준용
제32조제2항 제5호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00만원
제32조제2항 제6호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 600만원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1,000만원
제32조제2항 제7호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1회 200만원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500만원
제32조제2항 제8호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2. 과태료 세부산정기준

가.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 (1) 벌칙,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반법조별로 제32조제1항 각 호의 부과금액 준용
- (2) 최근 2년 이내에 경고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금액의 합계가 시행령 제33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구분	사 유	비 율
가중	○ 벌칙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감경	○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과태료의 부과가 심히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 가중·감경 예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ightarrow$ 부과될 과태료 금액 - {(부과될 과태료 금액 $\times$ 20%) + (부과될 과태료 금액 $\times$ 40%)}
 $\Rightarrow$ 감경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50으로 조정

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 감경전의 과태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세관장은 동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 세 관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처분 대장

처분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위 반 내 역			처분 내용	비고
		성명 (한자)	주 소			위반 법조	위반 일자	위반내용		
			주민번호	직업	성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②×0.2)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②+(②×0.05)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05)+(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우: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면)

의견진술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업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명/업체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 사 일 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검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우: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 일 자	

- 첨부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세 관 장 인

HI! 청렴, Bravo! 관세청



관 세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제정·시달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과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금액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
여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1부. 끝.

관 세 청 장



수신자 2.본청 각 과(청차장제외), 3.전국세관 각 과(직속기관 포함)

관세주사보

박재열

행정사무관

박계하

외환조사과장

이재길

조사감시국장

10/14

김철수

협조자

시행 외환조사과-1960 (2009. 10. 14.)

접수 수입3과-1952

(2009. 10. 15.)

우 791-120 대전 서구 둔산동 920 1동503호

/ <http://www.customs.go.kr>

전화 042-481-7932

전송 042-481-7949

/ pjaeyeol@customs.go.kr

/ 비공개(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1. 목 적

- 외환사범에 대한 벌칙처분 중 위반금액 5억원(자본거래 10억원)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었을 때 그 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함

2.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

(1)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은 거래행위별 매회 위반금액으로 판단한다.

-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과태료는 타 법의 과태료와 달리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위반금액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
- 거래행위별 매회 위반금액이 5억원(자본거래의 경우 10억원, 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 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준금액 초과 건은 벌칙적용을 위해 조사하여 검찰 송치

(2) 2009. 2. 4 이전 행위는 당시 시행되었던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09. 2. 4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가 동시 적발된 경우, 이전 행위는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행위 중 기준금액 이하의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 벌칙적용을 위해 조사하여 검찰 송치
- 과태료 건과 벌칙 건을 동시에 적발한 경우, 벌칙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간 종료 후 검찰 송치

(3) 과태료 처분은 위반행위별로 각각 처분하되 과태료는 일괄고지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 횟수가 다수인 경우 매회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되 일괄고지가 가능
- 이때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회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 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고지 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상 총 부과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4) 매회 위반행위(금액)가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법조별로 총 위반금액이 1만불(자본거래는 2만불) 초과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 법 제32조(과태료)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벌칙(법 제29조) 해당 사항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행정처분(법 제19조) 해당 사항은 제외규정 없음
- 각각의 위반금액이 경고·행정처분(법 제19조)에 해당하더라도 위반금액의 합계가 1만불(자본거래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5) 법 제29조제1항제9호의 재위반은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위반행위를 말하고,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재위반은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위반행위를 말한다.

- 법 제16조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또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칙 적용
- 법 제16조 위반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

※ 처리지침에 따른 처분 예시

적발사안	처분예시
① 제16조 위반금액 1억원, 6억원 각 1건 적발시	1억원은 과태료, 6억원은 벌칙
② 제18조 위반금액 건당 4억원 3건 적발시	모두 과태료
③ 제16조 위반금액 4억원, 제18조 위반금액 9억원 적발시	모두 과태료
④ 제16조 위반금액 건당 1억원, 6억원 각 1건 적발하고, 제18조 위반금액 7억원 적발시	제16조 위반 1억원과 제18조 위반 7억원은 과태료 부과, 제16조 위반 6억원은 벌칙
⑤ 제16조 위반금액 건당 1천만원 70건 적발시	모두 과태료
⑥ 제16조 위반금액 건당 1천불 30건, 제18조 위반금액 건당 1천불 50건 적발시	모두 과태료
⑦ 제16조 위반금액 건당 1천불 9건, 제18조 위반금액 건당 1천불 20건 적발시	모두 경고
⑧ 경고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16조 위반건의 총액이 1만불 초과, 경고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18조 위반건의 총액이 2만불 이하 적발시	제16조 위반은 과태료, 제18조 위반은 경고
⑨ 경고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16조 위반건의 총액이 1만불 이하, 경고에 해당하는 다수의 제18조 위반건의 총액이 2만불 초과 적발시	제16조 위반은 경고, 제18조 위반은 과태료